

#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 병 록\*

## 차 례

- I. 서론
- II. 각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III.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
- IV.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V. 결론

## I. 서론

1970년대 정부에 의한 개발주도형 정책의 집행으로 개인과 개인,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사이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민선자치시대를 거치면서 환경관련 갈등과 분쟁이 심각하면서도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분쟁에는 공통적인 특색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 피해자가 다수라는 것, 둘째 피해가 단순히 재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 셋째 가해자를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 넷째 가해행위와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 피해의 인정, 피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 등이다.<sup>1)</sup>

---

\* 서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따라서 이러한 환경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들 수 있지만, 제3자가 관여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는 크게 들로 나누어 보면 민간기구나 정부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등과 같은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보통 'ADR'이라 약칭된다)과 법원의 소송에 의한 판결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수단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환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결의 수단이 이용되어 왔으나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주장, 입증은 당사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다크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입수가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특정 및 가해행위와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에는 과학 기술적인 견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민의 사고 속에는 환경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적인 해결보다는 행정적인 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환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가 일반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조정(알선, 조정, 재정)제도에 대하여 우선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과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1) 최우용, "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2004, 576면.

2) 최우용, 위의 논문, 576면.

## II. 각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 1.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법(私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사(民事)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 중재 등과 같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ADR의 목적은 ①법원에의 사건폭주와 이에 따른 사건처리의 지연을 막아주고 분쟁해결비용을 줄이며, ②분쟁해결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③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하며, ④보다 효율적인(effective) 분쟁해결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각종의 ADR제도에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①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②분쟁처리과정에서의 법원개입의 가급적 배제, ③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역할의 축소, ④최소한의 비형식적인 분쟁해결절차, ⑤비공개적 사적인 절차, ⑥실체법적용의 회피와 창의적인 규범의 창조를 들기도 한다.<sup>3)</sup>

ADR 옹호론자들은 ADR의 목적 중 위 ④의 목적이야말로 ADR의 진정한 존립근거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하려면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종국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ADR은 바로 이러한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 2. 각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국가마다 환경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운

3) 허만, “美國에서의 司法裁判에 의하지 아니한 紛爭解決(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민사판례연구XIV』(민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1992, 447면.

4) Goldberg, Green and Sander, Dispute Resolution(Little and Brown, Boston, 1985), pp.5~7; 허만, 위의 논문, 447면에서 재인용.

영해온 것은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의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다름에 따라 제도운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ADR이 처음으로 도입된 북미의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일본을 중심으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개요를 비교하여 검토하여 우리나라와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미국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DR)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원래 18세기부터 상인간에 이용되어 오던 상사중재가 있고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단체 또는 지역공동체 등에 의한 조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정립된 개념은 아니나,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ADR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던 각종 ADR제도가 분쟁해결에 이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ADR운동(Movement)이 등장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가정·교회·지역사회 등이 더 이상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고도의 산업발달로 말미암아 환경분쟁·소비자분쟁 등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늘어났으며, 나아가 각종 법률은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종래에는 없었던 소송형태를 많이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연한 결과로 법원의 소송사건 수는 엄청나게 늘기 시작하였고<sup>5)</sup>, 이에 따라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 역시 엄청나게 늘게 되었다. 사건처리의 지연은 곧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수단의 부재 내지는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으로 비쳐졌고, 법원은 그 대책으로 판사의 증원, 사법시설의 확충을 꾀하였으나 소송사건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 및 학자들은 점차로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5) 예컨대 연방지방법원의 민사소송사건 수는 1940년에는 약 35,000건이었으나 1981년에는 약 180,000건으로 증가하였다. 허만, 앞의 논문, 446면 이하 참조.

1960년대부터 ADR에 대한 연구 및 활용이 미국에서 새로이 시작되었으며, 학자들은 원시부족사회의 분쟁해결방법을 소개하는 등 ADR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래 더 많은 법학자들이 사법재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ADR이 헌법해석에 관한 분쟁의 해결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법재판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ADR 옹호론자들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6년에는 미국변호사협회(ABA)가 ADR연구를 위한 ‘경미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Minor Disputes)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는 후에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Dispute Resolution)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ADR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미국의 법대에서는 ADR에 대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sup>6)</sup>

이러한 ADR운동(Movement)은 법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일반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민사소송의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 개선하는 한편 외부의 ADR 연구단체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고 법원 내에도 각종 ADR 제도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연방대법원장이던 Warren Burger가 1982년에 소송사건수의 증가와 사건처리의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중재 등 ADR제도들이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하고, 중국에 가서는 ADR이 소송절차에 대한 추가적 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대한 대체적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 주장하여 법원의 ADR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이다.<sup>7)</sup>

그러나 ADR운동(Movement)이 모든 사람들로 부터 찬사를 받지는 않았다. Yale대 법대의 Fiss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ADR에서는 효과적인 증거조사절차가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진실발견에 입각한 분쟁해결보다는 타협에 의한 표면적인 평화만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ADR은 비공개절차이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시정절차가 되지 못하고 ADR 주재자는 판사와는 달리 그 자격

6) 예컨대 Harvard 법대에서는 1989~90년 학기에 司法裁判에 의하지 아니한 紛爭解決(ADR), 協商(Negotiation), 調停(Mediation), 商事仲裁(Commercial Arbitration) 등 ADR에 관한 여러 강좌를 개설하였다.

7) Burger, "Isn't There a Better Way?", 68 A.B.A.J. 274(1982); 허만, 앞의 논문, 447면에서 재인용.

요건에 제한이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미국사회에서의 변호사 및 법원의 역할은 국민의 권리보호와 민주주의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ADR운동(Movement)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sup>8)</sup> 현재까지도 ADR 옹호론자들과 그 비판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ADR에는 기본적 분쟁해결방법(Primary Dispute Resolution Process)과 절충적 분쟁해결방법(Hybrid Dispute Resolution Process)으로 나누기도 한다.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한쪽편이 상대방에 굴복하거나 참고 넘어갈 때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협상(Negotiation)이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제3자가 판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사법재판(Court Adjudication)의 세 가지가 있다. 제3자가 일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없고 단지 당사자들의 협상을 도와주는 권한만이 있는 경우를 조정이라 하고, 판사가 아닌 사인인 제3자가 일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경우를 중재라 하며, 국가기관인 판사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를 사법재판이라고 한다.

절충적 분쟁해결방법은 위의 네 가지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의 특징을 서로 조합하여 보면 조정중재(Med-Arb)·법원중재(Court-Annexed Arbitration)·법원조정(Court-Annexed Mediation)·간이심리(Mini-Trial)·사적 판결(Private judging) 따위의 여러 가지 절충적인 분쟁해결방법을 만들어 내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8) Fiss, "Against Settlement", 93 *Yale L.J.* 1073(1984); 허만, 앞의 논문, 447면에서 재인용.

## (2) 독일

독일에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로서 대체적 분쟁해결 형태(Aternative Konfliktregelungsformen)에 관한 논의는 민사재판에 대한 대체안을 논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소송사건 증가에 의한 민사재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사법정책적 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학자들에 의해서 민사재판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sup>9)</sup>

처음에는 이러한 논의의 발단은 법사회학자들이 주도하여, 소송의 범람으로 인한 사법제도의 부담완화의 방법으로 조정, 중재, 법률상담 등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연방법무부와 학자 및 실무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재인을 당사자가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비공개진행이므로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논의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이 그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단지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진다.<sup>10)</sup> 실제 독일에서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부담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제1심 소송건수의 급증과 이에 대응하는 사법예산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sup>11)</sup> 1999년 12월 15일에 재판외분쟁조정촉진법(Gesetz zur Förderderung der außergerichtlichen

9) 양병희, “독일에서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제도”, 『인권과 정의』, 1994. 7, 37면.

10) 양병희, 앞의 논문, 38-39면.

11) 독일민사소송법 시행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세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4권 1호, 2002. 9., 294-295면 참조.

Streitbeilegung)을 제정을 통한 민사소송법시행법(EGZPO) 제15조a를 개정하여, 각 주법(Landesgesetz)에서 의무적 조정제도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 민사소송법시행법 제15조a에 의하면, 750유로(Euro) 이하의 소액소송, 상린관계법에 기한 청구권에 의한 소송, 출판이나 방송에 의하지 않은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권에 의한 소송의 경우에는 주법에 의해서 주사법행정(Landesjustizverwaltung)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승인된 기관에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일본

일본의 ADR도 행정형으로 건설공사, 공해,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곳이 있고, 민간형으로는 상사중재, 세탁분쟁, 교통사고분쟁 등을 다루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는 환경분쟁을 다루는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이하 '공조위'라 한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공조위는 공해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중립공정한 제3자기관으로서 법률적 판단을 제시하는 재정절차 등 민사소송에 준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행정에서의 분쟁처리기관(행정형 ADR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일본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2항에 기하여 총리부의 외국으로서 설치된 위원회로서,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법(이하 '공조위 설치법'이라 한다)이 근거법규이다.

1970. 11. 공해분쟁처리법에 의해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후, 1972년 조정 이외의 절차로 책임재정 및 원인재정의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공해심사위원회와 토지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지금의 공조위가 되었다.<sup>12)</sup>

공조위는 위원장 및 위원 6인(위원 중 3인은 비상근)으로 조직되고(공조위 설치법 제6조), 위원장은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수상이 임명한다(설치법 제7조1항). 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공조위 설치법 제19조1항), 그 정원은 40명이다(2000년 현재). 취급하는 공해사건은 환경법 제2조 3항이 규정하는 것

12) 자세한 내용은 谷口隆司, “公害等調整委員會の30年 - 回顧と今後の展望”, 『ジュリスト』 1233号, 2002, 39면; 최우용, 앞의 논문, 575면 이하 참조.

으로(공해분쟁처리법 제2조), 대기오염, 수질오탁, 토양오염, 소음, 진동, 기반침하 및 악취(전형 7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고, 일조, 통풍, 전파방해, 식품공해, 약품공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조위가 설치된 당초에는 공해에 의한 피해구제를 구하는 신청이 다수였지만, 점차로 보다 양호한 환경의 보전, 창조를 구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분쟁형태로, 구제에서 조정으로 분쟁처리의 중심과제가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3)</sup>

공조위의 분쟁해결의 전체적 특징을 든다면, 공조위의 절차는 비용부담의 경감,<sup>14)</sup> 전문적 지식의 활용(3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공조위 설치법 제18조)), 직권에 의한 자료수집과 조사, 행정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이용, 공해방지책으로의 반영(공조위는 수상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시책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공조위 설치법 제48조)) 등을 들 수 있다.<sup>15)</sup>

분쟁해결의 형태로는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이 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30일의 간격을 두고 당사자에게 제안하고, 그 때까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는 수락권고의 제도(공해분쟁처리법 제34조)가 이용되는 점이다.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어도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불이행 시에 공조위가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가 있다(공해분쟁처리법 제43조의2).

아울러 알선도 이용되고 있는데, 공해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에서 화해가 체결된 화해조항의 이행을 둘러싸고 공조위에서의 알선이 활용되고 있다.

재정은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지명된 3인 또는 5인의 재정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민사소송에 준한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판단(재정)을 하는

13) 南博方, “二〇周年を迎えた公害等調整委員會 - その実績と課題 -”, 『ジュリスト』 1008号, 1992, 30면.

14) 조정신청수수료는 민사조정신청의 3분의 1정도, 책임재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제기의 4분의 1정도, 그 밖에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5) 김상수,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분담”,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2006, 118면.

일종의 행정심판(공해분쟁처리법 제42조2 내지 33)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책임 재정을 가리킨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원인재정의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공해분쟁처리법 제42조의28), 공해와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수소 법원으로부터 공조위에 원인재정을 촉탁하는 제도도 설치되어 있다(공해분쟁처리법 제42조의32). 즉 공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수소법원은 공조위에 대하여 그 의견을 들은 다음 원인재정의 촉탁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sup>16)</sup>

책임재정은 재정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일견 처분의 성질을 갖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기판력이나 집행력이라는 효력은 없고, 재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당해 책임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공해분쟁처리법 제42조의 20).

### Ⅲ.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

#### 1. 개요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동법 제1조(目的)에 의하면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2조).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

16) 六車明, “公害等調整委員會における環境紛爭解決手続の特色 - 豊島事件の調停成立を契機に考える -”, 『判例タイムズ』 1035号, 2000, 98면.

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조정(調整)”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 2. 환경분쟁조정 유형

환경분쟁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방식은 알선, 조정, 재정이다.

첫째, 알선(斡旋)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3인 이내의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를 제공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알선위원이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 절차는 종료된다(동법 제3장 제2절).

둘째, 조정(調停)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3인 또는 1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sup>17)</sup>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는데, 만일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동법 제3장 제3절).

셋째, 재정(裁定)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5인 또는 3인(대통령령이 정하는

17)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사건인 경우)<sup>18)</sup>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듣는 심문절차 및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주문과 이유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재정을 행한다. 이 재정문서는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는데, 당사자가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제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때, 또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재정인 경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불복하여 재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3장 제4절).

환경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한 재정의 판단방법이나 형식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동법 제37조 제1항이 재정위원회가 심문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에서 재정위원회의 증거조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39조에서 증거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정은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되 주로 실무적인 시각에서 논하게 될 것이며, 이 중 “구성”에 대하여는 인적 구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1990년 제정되고 1991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7년 8월 개정을 하면서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바뀌었다.)에 의해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처리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운영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업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

18) 조정가액이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6조).

정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동법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 모두 ①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③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④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을 관할한다(동법 제5조).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에서 ① 분쟁의 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③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④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 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분쟁의 조정으로서 관할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을 관할한다(동법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 중에서 ② 내지 ⑤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동법 제6조 2항). 다만, 분쟁의 재정의 경우에는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하는데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사무로 한다(동법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항).

##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①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④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조정위원회에 임명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동법 제8조).

####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

##### (1) 총괄

2007. 3. 31 현재 환경분쟁 조정현황<sup>19)</sup>을 살펴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91. 7. 19~'07. 3. 31까지 총 1,971건을 접수하여 1,622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256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93건은 현재 처리중이다.

신청사건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200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처리건수 1,622건 중에서 재정 813건, 조정 39건, 중재합의 770건으로 나타나 재정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19) 이 자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 3. 31 현재 환경분쟁조정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자료출처 ; [http://edc.me.go.kr/bunjang/user/pds/collect\\_list.html?topcode=C&subcode=50](http://edc.me.go.kr/bunjang/user/pds/collect_list.html?topcode=C&subcode=50).

〈표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단위 : 건수)

구 분	접수 현황			처 리 현 황				자진 철회	처리중 (이월)
	계	접수	전년 이월	계	재정 (裁定)	조정 (調停)	중재 합의		
합 계	-	1,971	-	1,622	813	39	770	256	93
'07.3	142	63	79	44	31	-	13	5	93
'06	276	202	74	165	83	2	80	32	79
'05	266	166	100	174	100	4	70	18	74
'04	372	195	177	223	101	1	121	49	(100)
'03	550	350	200	292	87	-	205	81	(177)
'02	493	440	53	263	118	2	143	30	(200)
'01	184	154	30	121	68	7	46	10	(53)
'00	100	70	30	60	39	3	18	10	(30)
'99	119	82	37	79	35	1	43	10	(30)
'98이전	249	249		201	151	19	31	11	(37)

(2) 피해원인

분쟁조정사건의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처리된 1,622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1,408건(87%)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대기오염 125건(8%), 수질오염 58건(4%), 해양오염 9건(1%), 기타 22건(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원인은 과학적인 시험을 거쳐서 쉽게 원인규명이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울 것이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까지는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피해정도를 판단해 내기가 어려워서 분쟁조정사건의 비중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0)</sup>

20) 이에 대하여 소음·진동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의 경우,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및 아파트 건설공사 등 공사내용 및 규모

〈표 2〉 분쟁조정사건의 피해원인별 현황(단위 : 건수, %)

구 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1,622	1,408	125	58	9	22
(%)	(100)	(87)	(8)	(4)	(-)	(1)
'07.3	44	42	1	-	-	1
'06	165	150	8	3	-	4
'05	174	151	11	5	-	7
'04	223	206	8	3	1	5
'03	292	264	19	8	-	1
'02	263	229	26	4	-	4
'01	121	103	11	7	-	-
'00	60	49	7	4	-	-
'99	79	67	8	4	-	-
'98이전	201	147	26	20	8	-

※ 기타는 토양오염 3, 추락위험 1, 기름유출 2, 생태계 1, 일조권13, 입지선정1, 통풍방해1

### (3) 피해유형별 청구내용

분쟁조정신청사건의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처리된 1,622건 중 정신적 피해가 661건(41%)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76건(23%), 축산물 피해 234건(15%), 농작물 피해 87건(5%), 건축물 피해 57건(3%), 수산물 피해 48건(3%), 기타 159건(10%)으로 나타났다.

환경피해의 특성상 유형적인 피해인 농수축산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많지만 정신적 피해가 사실상 64%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 다양화되고, 공사장 인근의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대기·수질분야보다 오염도검사 등의 입증방법이 용이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 28권 제1호, 2006, 138면.

〈표 3〉 분쟁조정사건의 피해유형별 현황(단위 : 건수, %)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 수산물 피해	해양 수산물 피해	기타 피해
계 (%)	1,622 (100)	661 (41)	376 (23)	234 (15)	87 (5)	57 (3)	38 (2)	10 (1)	159 (10)
'07.3	44	16	16	4	1	1	1	-	5
'06	165	74	40	20	6	3	2	-	20
'05	174	72	40	22	10	1	4	-	25
'04	223	107	49	33	9	1	1	1	22
'03	292	149	58	18	9	12	5	-	41
'02	263	121	65	42	13	7	1	-	14
'01	121	36	33	26	8	2	5	-	11
'00	60	16	13	15	4	2	5	-	5
'99	79	19	22	23	6	4	2	-	3
'98이전	201	51	40	31	21	24	12	9	13

※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 (4) 분쟁조정사건의 발생지역별 현황

분쟁조정사건의 발생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된 1,622건 중 서울 422건 (26%), 경기 377건(23%), 인천 101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모두 900건으로 55%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722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발전정도나 인구분포로 미루어보아 수도권의 비중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분쟁조정사건의 발생지역별 현황(단위 : 건수,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1,622 (100)	422 (26)	100 (6)	17 (1)	101 (6)	13 (1)	33 (2)	39 (2)	377 (23)	52 (3)	59 (4)	64 (4)	70 (4)	96 (6)	98 (6)	74 (5)	7 (1)
'07.3	44	5	4	-	6	-	-	-	14	1	-	1	3	6	1	3	-
'06	165	34	14	3	17	1	2	3	40	4	4	2	8	8	16	9	-
'05	174	34	20	2	9	1	1	1	39	4	6	9	7	13	11	16	1
'04	223	59	19	1	4	2	4	6	59	7	2	5	4	21	16	13	1
'03	292	94	23	5	16	4	8	5	59	10	7	6	14	12	15	11	3
'02	263	57	6	2	15	3	5	21	59	9	18	12	15	11	19	10	1
'01	121	33	4	-	6	1	5	3	27	3	7	5	6	9	11	1	-
'00	60	14	-	1	3	-	2	-	18	5	1	3	-	5	5	3	-
'99	79	27	1	-	13	1	2	-	17	1	4	8	1	1	1	1	1
'98이전	201	65	9	3	12	-	4	-	45	8	10	13	12	10	3	7	-

## (5) 처리기간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된 1,622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362건(22%), 4~6개월 668건(42%), 7~9개월 509건(31%), 10개월 이상 81건(5%)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6개월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6항). 동법 제16조 제6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서 알선의 경우에는 3월,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에는 9월로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다만,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의 입증 또는 배상액의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월 또는 9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

분쟁조정신청사건이 모두 조정이나 재정사건임을 감안할 때 9월이라는 처리기

한내에 95%가 처리되고 평균처리기간으로 5.6개월이 소요된 것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현황(단위 : 건수, 개월, %)

구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기간별 처리 건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상
계	1,622 (100)	5.6	69 (4)	96 (6)	197 (12)	207 (13)	236 (15)	225 (14)	192 (12)	170 (10)	147 (9)	81 (5)
'07.3	44	3.9	1	10	3	13	9	8	-	-	-	-
'06	165	5.6	5	5	9	20	39	34	29	14	8	2
'05	174	6.4	3	4	6	10	25	38	37	26	19	6
'04	223	7.3	14	1	5	9	14	13	32	39	66	30
'03	292	6.5	10	8	10	9	31	59	60	63	33	9
'02	263	3.1	17	39	86	69	45	7	-	-	-	-
'01	121	3.5	10	13	27	33	15	9	6	5	1	2
'00	60	4.7	3	4	11	8	9	7	5	6	4	3
'99	79	5.4	1	3	8	14	14	16	9	6	5	3
'98이전	201	5.7	5	9	32	24	35	34	14	11	11	26

(6) 처리형태

처리된 1,622건 중에서 재정사건은 1,583건, 조정사건은 39건으로 재정사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이중 배상결정은 657건(41%), 기각 147건(9%), 방음대책 등 9건(1%), 중재합의 770건(49%)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4건(36%), 조정중단 23건(59%), 기각 2건(5%)으로 나타났다.

〈표 6〉 분쟁조정사건의 처리형태별 현황(단위 : 건수, %)

구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 대책					
합계 (%)	1,622	1,583 (100)	657 (41)	147 (9)	9 (1)	770 (49)	39 (100)	14 (36)	23 (59)	2 (5)
'07.3	44	44	29	2	-	13	-	-	-	-
'06	165	163	62	20	1	80	2	-	2	-
'05	174	170	74	24	2	70	4	1	3	-
'04	223	222	80	19	2	121	1	-	1	-
'03	292	292	66	19	2	205	-	-	-	-
'02	263	261	105	12	1	143	2	1	1	-
'01	121	114	59	8	1	46	7	3	4	-
'00	60	57	32	7	-	18	3	2	1	-
'99	79	78	32	3	-	43	1	1	-	-
'98이전	201	182	118	33	-	31	19	6	11	2

## (7) 처리사건 별 배상결정유형 및 배상율

처리된 1,622건 중에서 배상결정이 657건(40%)이고 중재합의가 784건(48%), 기각이 149건(9%),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이 32건(2%)로 나타났다.

〈표 7-1〉 분쟁조정 처리사건의 배상결정 현황(단위 :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622 (100)	657 (40)	784 (48)	149 (9)	32 (2)

전체 조정사건 중에서 배상결정한 657건의 배상신청금액은 282,202,254원에서 배상 결정액은 26,781,945천원으로 나타나 배상율은 9.5%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1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3년 15.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2006년에는 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배상결정율이 최고 17.7%에서 최저 5.3%로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우나 환경피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신청자의 과다한 청구금액 등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표 7-2〉 분쟁조정처리사건의 배상결정액 및 배상율(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 (B/A)
계	657	282,202,254	26,781,945	9.5
'07.3	29	8,100,484	512,947	6.3
'06	62	29,794,319	1,577,988	5.3
'05	74	30,469,412	2,566,881	8.4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02	105	40,737,955	4,250,725	10.4
'01	59	15,445,239	2,735,743	17.7
'00	32	11,500,719	899,000	7.8
'99	32	11,266,595	675,276	6.0
'98이전	118	81,373,661	6,898,102	8.5

#### (8) 합의율

처리된 1,622 중 효력이 확정된 1,605건의 내용을 보면, 1,345건(84%)은 합의, 260건(17%)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로 나타났다.

사법적인 절차로 이행되기 전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서 84%의 처리

내지는 청구인(피해자)이 구제를 받게 된 것은 기관의 존립목적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sup>21)</sup>

〈표 8〉 분쟁조정 처리사건의 합의율 현황(단위 : 건수, %)

구분	조정(調整) 현황	효력 확정			합의기간 미 도 래
		계	합 의	미합의	
합계	1,622	1,605(100)	1,345(84)	260(16)	17
'07.3	44	27	26	1	17
'06	165	165	147	18	
'05	174	174	140	34	
'04	223	223	191	32	
'03	292	292	262	30	
'02	263	263	221	42	
'01	121	121	90	31	
'00	60	60	50	10	
'99	79	79	71	8	
'98이전	201	201	147	54	

#### IV.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21) 한국소비자원이 1987년 개원한 이후 2007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되어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7,432건의 조정결과를 보면 배상이 3,078건(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이 1,399건(18.8%), 계약해제가 1,313건(17.7%)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 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70%를 상회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80%를 상회하는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에는 88.7%의 매우 높은 성립률을 보인 적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81.1%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0년 실적집』, 2007. 6. 28., 63-64면.

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up>22)</sup>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서 일부는 법개정을 통해서 개선되기도 하였고<sup>23)</sup> 일부는 오히려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한다.<sup>24)</sup> 여기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 중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정 제도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제도 모두를 비교검토하기에는 어려워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장점을 일부 비교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문제점

###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의 확보문제

분쟁당사자들이 환경분쟁조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sup>25)</sup> 아무래도 사법부의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하고 있어서 피라미드와 같은 일정한 행정조직에 의하여 움직이는 행정공무원은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

22) 우동기·장영두,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협상연구』 제5권 제2집, 1999, 27-62면; 김시평,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1권, 1999, 81-99면;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 제26권 3호, 2004, 219-241면; 김세규, 앞의 논문, 285-319면; 조홍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 2006, 13-75면 참조.

23) 2000. 12. 30일 개정·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 일조방해를 환경오염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일조방해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24) 구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이행청구소송 없이도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은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면 개정할 당시에 삭제되었다.

25) 조홍식, 위의 논문, 65-66면.

닌가 하는 인상이 짙다. 환경분쟁에 있어서는 특히, 행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행정작용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전체적·통일적 행정목적의 달성에 정향되어 있는 만큼 해당 행정기관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의심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

현재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 1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률(환경분쟁조정법 제7조 제1항)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보장한 것의 최하한선을 지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에서 상근하는 사람은 없고 비상임위원 자격으로 분쟁조정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분쟁조정위원이 비상근,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어 전문성·독자성이 약하고 공신력의 발휘가 어려우며, 환경분쟁의 특성상 전문가의 지원을 가능케 할 기구가 없고, 분쟁처리방식의 소극성, 피동성, 절차적 복잡성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원장 1인만의 1인 상임위원 체제로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즉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있으나 외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업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개개의 분쟁사건의 처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가진 비상임위원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모든 분쟁조정업무를 통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sup>26)</sup>

### (3) 재정위주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문제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2007년 3월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전

26)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2006, 91면.

체 사건은 1,622건이며, 그 중 재정사건이 재정사건은 1,583건, 조정사건은 39건으로 재정사건이 전체에서 97.6%를 차지할 만큼 재정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조정(調整)이 손해배상여부에 관한 재정 위주로 행해지고 있어 제도 시행상 심각한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제도는 간편하고 신속한 환경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존재이유를 가지지만, 일본과는 대조되는, 우리나라의 재정사건 중심의 운영 방식은 실제 조정제도의 본질인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형식이 되므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27)</sup>

예를 들어, “재정제도는 간편하고 신속한 환경분쟁해결제도로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재정위주로의 사건 처리는 실제 조정제도의 본질인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형식이 되므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재정은 준사법적 절차로서 공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중앙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재정 위주로 운영될 것 같으면, 조정 위원 중 법률 전문가의 숫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든지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 운영을 보면 조정제도 중에서 중요한 조정기능이 소홀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은 준사법적인 절차로서 법률에 기초하여 공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전문가는 중앙조정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재정은 마치 법원의 판사에 의한 재판에 의한 경우와 같으므로 심도 있는 법률상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재정위원회의 구성에서 많은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sup>28)</sup>

#### (4)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 미흡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방식은 재정이거나 조정인데, 재정이거나 조정을

27) 전경운, 앞의 논문, 239면.

28) 전경운, 앞의 논문, 234, 239면.

통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의 효력(사법상의 화해계약)만이 인정된다(동법 제33조 2항, 제42조 2항).<sup>29)</sup> 법원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화해나 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적어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이 인정되는 점과 비교하면 확실성은 결여된다. 이에 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에 대하여 당사자의 승복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 점이 구속력이 필요성을 없게 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sup>30)</sup>

## 2. 발전방안

###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의 확보

환경분쟁의 당사자로부터 중립성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된 법인조직으로 하여 분쟁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명도 환경부를 퇴직한 공무원이 바로 옮겨오는 자리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다양화하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립당시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였으나 1995. 12. 29.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9인으로 확대되었고 2001. 3. 28. 개정으로 30인으로 확대되었으며 2006. 9. 27.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으로 50인으로 확대되었다.

50인의 분쟁조정위원 중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29)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조서는 모두 재판상 화해와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30) 김상수, 앞의 논문, 121면, 이에 대하여 김세규, 앞의 논문, 305-306면에서는 당사자의 승복율이 높으면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소를 통해 쉽게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상임으로 구성되므로 각 품목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전문분야의 조정위원이 위원회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정확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sup>31)</sup>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48인)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 각계의 전문가(의료, 제조물책임, 농업 등)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단위 : 인)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합계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분야별 전문가	변호사	소계	
2	9	9	24	6	48	5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조정기구들 중에서 더욱 더 전문성이 요청되는 기구라고 하겠다. 전문성 확보의 첫 번째 요건으로는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들 수 있다.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법적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정기관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주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sup>32)</sup>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또한 실체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사자의 진정한

31) 한국소비자원, 앞의 책, 57면.

32) 김시철, “우리나라와 미국의 AD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2, 390-391면.

동의에 기해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는 쌓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참여당사자들 사이에 교섭력이 차이가 나면 사람들이 그 분쟁조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교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사실저오 및 법률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교섭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위원의 자격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sup>33)</sup>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계속 확보하여야 하고, 다양한 알선·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sup>34)</sup>

전문성확보의 한 방안으로 위에서 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과 같이 전체 비상임위원 48명중에서 24명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것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도 분야별 전문가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재정위주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재정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97% 이상이 재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운영현황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조정은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조정기구에 의한 중개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므로 조정위원회의 성격상 재정보다는 조정이 더 어울리는 제도이다.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쌍방의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

33)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분야나 법조에서 오래 봉직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4) 조홍식, 앞의 논문, 66면.

식으로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중앙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sup>35)</sup>

재정은 준사법적인 절차로서 공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중앙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재정위주로 운영될 것 같으면, 조정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숫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은 준사법적인 절차로서 법률에 기초하여 공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전문가는 중앙조정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재정은 마치 법원의 판사에 의한 재판에 의한 경우와 같으므로 심도 있는 법률상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재정위원회의 구성에서 많은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재정결정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행한 재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간다고 할 것이다.<sup>36)</sup>

#### (4)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집행(enforceability)을 강화함으로써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

우선 찬성의견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통한 환경분쟁조정

35) 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 한편 시행령 제23조는 그 대상으로 ①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과, ②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36) 전경운, 앞의 논문, 239면.

제도의 실질화를 위하여 조정조서 또는 재정문서에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sup>37)</sup>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 사법권 독립주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조정제도 활용을 위축할 소지가 있으므로 선불리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sup>38)</sup>

또한 이와 달리 분쟁조정 결과의 구속력 또는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분쟁 당사자별로 피해자 및 환경단체 등과 가해자 및 기업 등의 선호함수가 각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39)</sup>

생각건대, 분쟁조정은 재판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로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나 재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이며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단 양당사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위원회의 조정(재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조서상의 분쟁조정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위에 공기관에서의 확인을 거쳤다는 측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단순한 당사자간의 화해가 아니라 준사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40)</sup>

37) 김상수, 앞의 논문, 122면; 이상규, “환경오염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제 219호, 1994. 11., 36면; 이경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12., 253, 270면 등.

38) 김홍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문제연구총서』9권, 대한변호사협회, 2001, 44 ; 조현권, 『환경법-이론과 실무』, 법률문화원, 1999, 348면 등을 참조.

39) 홍준형, 앞의 논문, 163면.

40) 한국소비자원, 앞의 책, 65면.

## (5)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지원제도의 도입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명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재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재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및 시간, 비용의 부담 때문에 소제기를 꺼린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환경피해사건의 복잡성 및 소송가액의 적음을 이유로 소송수행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아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피해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물론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결과와 조정(재정)안을 가지고 소송에서 다투어 구제받을 수는 있다.<sup>41)</sup>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조정절차까지 거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소송지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1994년 5월 최초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100인 이내의 소송지원변호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은 소비자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중 한국소비자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도부터 실시한 소비자 소송지원 건수는 모두 67건이었다. 이중 53건이 승소하였고 패소가 3건, 화해가 7건, 기각, 취하 1건 등으로 승소율이 94.6%에 달하는 등 소비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sup>42)</sup>

41) 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조정결정이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관계 인정 등과 관련하여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환경소송에 대한 대체적·보완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한다. ; 홍준형, 앞의 논문, 145면.

42) 한국소비자원, 앞의 책, 68면.

소송지원내용은 2003년 이후부터 변호사 알선보다는 소비자원 직원에 의한 간접적인 소송상담, 안내, 소장 등의 작성을 자문해 주고 있다.

〈표 10〉 소송지원 결과(2006. 12.말 현재)(단위 : 건수)

구분	승소	패소	화해	취하	기각	위임종료	계
건수	53	3	7	1	1	2	67

## V. 결론

현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분쟁조정제도는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환경오염의 피해자들이 소송제도에서 느끼는 불편과 단점을 해소해 주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의 이점을 활용해 온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91년 이후 1,622건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연간 100여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서 복잡하고 난해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그간의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송제도와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환경분쟁해결의 양대 기둥으로서 위치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나 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는 것이므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독립성, 직무상의 중립성,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재정중심의 조정에서 탈피하여 알선과 조정, 재정의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환경피해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정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 28권 1호, 2006.
- 김상수,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과 ADR의 역할 분담”,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2006.
- 김세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4권 1호, 2002.
- 김시철, “우리나라와 미국의 ADR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2.
- 김시평,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1권, 1999.
- 김홍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문제연구총서』9권, 대한변호사협회, 2001.
- 양병희, “독일에서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제도”, 『인권과 정의』, 1994.
- 우동기·장영두,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협상연구』 제5권 제2집, 1999.
- 이경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제25권 제2호, 1992. 12.
- 이상규, “환경오염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제219호, 1994.
- 전경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제26권 3호, 2005.
- 조현권, 『환경법-이론과 실무』, 법률문화원, 1999.
- 조홍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 2006.
- 최우용, “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2004.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0년 실적집』, 2007. 6. 28.
- 허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민사판례연구 XIV』(민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1992.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 연구』 제28권 제1호, 2006.

谷口隆司, “公害等調整委員會の30年-回顧と今後の展望”, 『ジュリスト』 1233号, 2002.

南博方, “二〇周年を迎えた公害等調整委員會-その実績と課題-”, 『ジュリスト』 1008号, 1992.

六車明, “公害等調整委員會における環境紛争解決手続の特色-豊島事件の調停成立を契機に考える-”, 『判例タイムズ』 1035号, 2000.

[http://edc.me.go.kr/bunjang/user/pds/collect\\_list.html?topcode=C&subcode=50](http://edc.me.go.kr/bunjang/user/pds/collect_list.html?topcode=C&subcode=50).

<Abstract>

## The Status and Improvement Schemes of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hoi, Byung Rok

When individuals need to resolve their disputes with other individuals, they may often go not only to courts for trial but also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icient operation of environment dispute mediation in Korea, In Chapter 2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of America, Germany and Japan is roughly summarized. Chapter 3 reviews the status of environ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Finally, chapter 4 proposes the improvement schemes for the problems in the environ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riter of this article emphasized the affirmative functions and roles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which is also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Dispute Mediation Act' was enacted in 1990, and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CEDMC) became a standing organization. The total rate of adjusted disputes by the CEDMC was over 84% from 1991 to 2007. In 1997 the extent of environmental dispute were magnified by chang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EDMA)'. The EDMA provides for the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good offices, arbitrations, and adjudications.

주 제 어 : 환경분쟁,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판의 분쟁해결제도, 조정, 재  
정, 분쟁조정

Keywords : Environmental Disput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CEDM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ediation, Arbitration, Adjudication